

'99 주요업무계획보고

'99. 2

환경관리과

보고 순서

I. 일반현황

II. '99주요업무보고

- 환경 친화적 자치구 조성
- 깨끗한 환경 만들기
- 맑은공기 보전대책
- 수질보전대책
- 소음·진동 방지대책
- 토양오염 방지대책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III. 특수사업

- 환경교실운영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순회점검

I. 일반 현황

□ 직원 정·현원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원	19	1	3	9	4	2	.
현원	18	1	3	6	5	3	.

□ 분장사무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생활공해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업무 계획수립 및 통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교육·홍보 및 시민운동 ○깨끗한서울가꾸기 관련 시민운동 ○환경오염 배출시설설치(변경) 허가 및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무허가공해업소에 관한사항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사항 ○국토대청결운동 및 국토가꾸기 관련 시민운동 ○유해화학물질 판매,취급업소 관리 ○하천오염감시 ○환경교육·홍보 및 시민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공해단속 및 행정처분 ○생활공해(소음·진동,분진,악취등)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특정공사장관리 ○자연보호운동 계획수립·시행 관련 시민운동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홍보 및 시민운동

□ 환경관련업소 현황

(‘99.1.31현재)

계	대기배출업소	수질	소음	유독물	토양오염	공사장
1,037	151	355	127	230	117	57

II. '99주요업무보고

【 환경 친화적 자치구 조성 】

추진방향

- 환경 친화적인 자치구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 방향 설정
- 시민 환경오염 감시 활성화
-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로 환경보전 의식 정착화

□ 영등포구 녹색서울 환경 감시단 운영

- 목적 : 자치구와 주민, 민간단체등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 환경개선등 효율적 활동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자치구 중심의 지역별 주민환경 감시체제 구축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율 환경감시체제 구축
- 주민 환경감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 구성

- 환경에 관심을 가진 지역주민 103명으로 구성(1997.11.5)
(자연보호협의회, 영등포 KBS 환경교실, 영등포해병전우회, 기타주민)

○ 운영방법

- 주민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원칙으로 함
- 지속적 감시활동 전개
- 분과위원회별 활동 후 매분기 말월 평가보고회 개최
- 환경관련시설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 도모
-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감시활동 적극 추진
- 감시활동 지침 시달

□ 환경보전교육

- 대 상 : 환경관리인 및 배출업소 대표자
- 실시기간 : 연1회 및 수시교육실시
- 교육방법 : 전문강사 초빙 강연 및 구환경행정 안내
- 내 용
 -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 및 사명감 확립
 -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

□ 시민홍보

- 목 적 : 우리구 환경실태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여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고취
- 책자발간 : 2,500권
- 홍보대상 : 구·동사무소 민원실, 각급 학교, 시민단체, 유관단체, 환경오염 우려업소 등
- 내 용
 - 환경보전에 관한 기초상식
 - 환경보전 실천사항 등
- 소요예산 : 5,000천원
- 효 과
 - 환경오염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지역환경에 관한 관심도 부여
 - 주민들의 환경의식 함양을 통하여 보다 깨끗하고 맑은 환경조성

【 깨끗한 환경 만들기 】

□ 환경정비

○ 추진기간

- 상반기 : '99. 3. 1 ~ 4. 30
- 하반기 : '99. 9. 1 ~ 10.31

○ 추진방향

-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 조성
-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중점 추진
- 주민, 단체, 직장 등 자율참여 유도
- 노후 시설물 단장으로 깨끗한 환경조성

○ 중점 추진내용

- 간선도로변 중점정비
- 동별 주민참여 시민사업 추진
- 기능부서별 관련분야 특색사업 추진

□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매월 첫째주 금요일)

○ 추진기간

- 1차 : 행락철(7.20~8.20)
- 2차 : 가을철(10.1~10.31)

○ 장 소 : 하천(한강, 도립천, 안양천) 및 생활주변

○ 참여주체 :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자, 공무원등

○ 소요예산 : 2,000천원

○ 추진내용

- 하천, 제방 및 도로변등 취약지역의 쓰레기, 오물등 수거
- 뒷골목등 생활주변 청소

□ 겨울철새 보호활동

○ 일 시 : '99. 1월~2월 및 10월

○ 장 소 : 여의도밤섬

○ 참여인원 : 자연보호협의회, 자원봉사자, 공무원등

○ 추진내용

- 철새 모이주기, 새집 달아주기
- 밤섬내 오물등 자연정화활동 실시

○ 소요예산 : 60만원(통보리, 옥수수등)

【 맑은공기 보전대책 】

추진방향

-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
- 매연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 주민 홍보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 대상 : 151개소
 - 추진계획
 - 지도점검 : 업소별 등급(청,녹,적)에 따라 차등 실시(연1~4회)
 - 점검내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여부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 대기오염도 검사
- 겨울철 대기오염 소각행위 특별단속
 - 대상
 - 대기배출업소 및 소각로 보유업체
 - 정비업소, 카센터, 공사장등
 - 시장 및 주택가 쓰레기 소각
 - 기간 : '98.11월~'99.3월
 - 내용
 - 대기오염배출업소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 및 소각
 - 폐유, 기름걸레등 악취발생물질 무단소각행위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측정기 및 비디오 단속

- 대 상 : 운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사용 전차량
- 목 표 : 40,000대
- 단속방법 : 단속반편성 4명 1개반
- 측정항목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측정
- 단속장소 : (주)방림방적앞, 공군회관앞
- 내 용 : 다수차량 보유업체 및 차고지(버스, 택시등) 순회단속은 측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통행차량 단속은 측정기 및 비디오 단속을 병행 실시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 매주 화요일 문래역
- 관내 거주구민 차량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측정의뢰시
- 통행차량중 본인이 원할 경우

□ 오존경보제 실시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지역거주 주민들의 건강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

- 기 간 : '99. 5월~9.30
- 경보발령(해제)기준 및 행동요령
 - 경보구분(3단계) : 오존오염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
- 오존경보 발령대비 비상근무 실시
 - 근무시간
 - 평 일 : 19:00까지
 - 일요일(공휴일) : 10:00~별도지시때까지
 - 근무인원 : 구청(환경관리과) 3명, 동사무소 2명
 - 근무내용
 - 오존경보 발령(해제)시 각동 및 전파대상기관에 FAX와 유선통보 병행
(전파대상기관 : 동사무소, 종합병원, 아파트, 유선방송사, 대기배출업소등)

□ 악취발생업소 관리

○ 다량 악취배출업소 중점관리

- 대 상 : 롯데삼강, 롯데제과, 제니코, 영화장유 등(6개소)
- 추진계획
 - 지도점검 : 분기1회이상 및 민원발생시 수시 실시
- 점검내역
 - 방지시설 운영실태 및 저감방안 강구
 - 업소주변의 피해정도 파악 및 대책강구
 - 악취물질의 발생공정, 과정 확인 및 개선방안 강구
 - 원료 및 폐기물의 보관상태 확인
 - 기타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시 비상대책 여부등

□ 비산먼지 저감

○ 공사장 지도점검

- 대 상
 - 건축공사 : 건축연면적 1,000㎡ 이상
 - 굴착공사 : 총연장 200m 이상, 토사량 200㎡ 이상
 - 철거공사 : 철거 연면적 3,000㎡ 이상
- 추진계획
 - 지도점검
 - 정기점검 : 특별관리공사장(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이상)
 - 월1회이상
 - 월2회이상 실시(황사현상 발생시기인 3월~5월)
 - 수시점검 : 민원발생 및 필요시
 - 관계자교육 : 연1회
- 점검내역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여부
 - 신고사항 일치 여부
 - 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 토사운송차 덮개 설치 여부
 - 방음, 방진시설 설치 여부

【 수질보전대책 】

추진방향

- 폐수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 하천 오염방지 및 순찰강화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 대 상 : 355개소
- 추진계획
 - 지도점검
 - 업소별 등급에 따라 연1회이상
 - 기타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 점검내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여부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여부
 - 폐수 무단방류여부
 - 기타 환경오염행위

□ 하천 수질오염사고 방지

- 대 상 : 안양천, 도림천, 여의도 샛강
- 추진계획
 - 하천감시 강화
 - 순찰반편성 운영
 - 운 영 : 취약시기(우천시등)에 순찰
 - 감시내용 미처리폐수 및 특정폐기물 유입여부
기타 환경오염행위
 - 수질오염사고시 방재체계 확립
 -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 : 청소행정과와 합동
 - 인근 구청과의 협조체계 구축
 - 방재장비 보유
 - 장비현황 : 오일펜스, 흡착제, 유처리제등

【 소음·진동 방지대책 】

추진방향

- 소음발생 사업장 관리강화
- 생활소음 발생원 지도계몽

□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 대 상 : 127개소
- 점검기간 : '99. 1. ~ 12. (연중)
- 추진계획
 - 지도점검
 - 업소별 등급에 따라 점검
 - 기타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 점검내역
 - 방지시설 적정여부
 - 배출시설 변경여부

□ 이동소음원 규제

- 규제대상
 -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규제기간 : 연중(5~10월 하절기 및 행락철 중점 단속)
- 규제지역 : 상업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전지역
- 규제내용 및 위반사항 조치
 - 사용금지, 소리크기 조절, 사용할 시간 제한 등 조치명령
 - 불이행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 토양 오염 방지 대책 】

추진 방향

토양오염 유발시설인 석유류 저장시설을 지도점검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관리, 보전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

□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

계	산업	주유소	주거	숙박	운송	관공서	기타
117	8	53	21	1	1	7	26

※ 117개소 모두 석유류 저장 시설임.

□ 점검사항

- 주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여부 확인
 - 매 년 1 회 : 15년이 경과된 시설
 - 2년마다 1회 : 5년이상 15년미만 시설
 - 3년마다 1회 : 5년이 경과되지 않은시설
- 토양오염검사주기 대상 업소수
 - 1년-37개소, 2년-29개소, 3년-38개소, 기타(옥내설치)-13개소

【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책 】

추진 방향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 유독물 취급, 판매업소 관리강화

□ 유독물 판매업소 점검

- 대 상 : 230개소(판매업:225개소, 사용·보관업:5개소)
- 추진계획
 - 교 육 : 대표자 및 관리인(연1회)
 - 지도점검
 - 정기
 - 자체방제계획수립 대상업소 : 연4회(분기1회)
(연간2,000t이상 사용판매보관업소 13개소)
 - 유독물 사용·보관업소 : 연2회(반기1회)
 - 유독물 판매업소 : 연1회
 - 수시 : 민원발생 및 필요시
 - 점검내역
 - 등록사항의 적정여부
 - 시설·장비, 유독물표시 및 유독물 관리기준의 적정여부
 -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등 유독물 유출여부 확인
 - 신규 화학물질 취급여부 확인
 - 제조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화학물질의 취급여부 확인
 - 유독물 관리대장의 철저한 기록, 유지, 보존여부 확인
 - 유독물관리자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 “자체방제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준수여부 등

□ 유독물 사고시 비상조치

- 유독물의 누출, 화재, 폭로, 접촉사고시 응급조치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 조치 : 유독물 사고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 주간 : 환경관리과
 - 야간 : 구청 당직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추진 방향

-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환경오염예방 및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개선의 투자재원 합리적 조달

○ 부과대상

- 시설물 : 소비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 건물(단, 공장.창고.주차장등 제외, 주택면제)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매연여과장치 부착차량 제외)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6.30, 12.31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 부과계획

(단위 : 백만원)

총 계		시설물		자동차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4,641	6,822	9,641	3,246	55,000	3,576	

* '98년도 부과징수보다 자동차 보유와 시설물의 용수사용량 감소로 부담금 부과징수 감소예상

○ 부과기간 및 납기

○ 부과기준일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Ⅲ. 특 수 사 업

【 환경교실운영 】

- 대 상 : 관내 20개 초등학교 4, 5, 6학년 13,000명
- 기 간
 - 상반기 : 5월
 - 하반기 : 10월
- 교육내용 :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제작한 비디오 상영등 환경보전에 관한 기초상식 및 실천사항들을 순회 교육 실시
 - 생명의 근원 물 - 한강
 - 환경교육의 권장
 - 재활용 허와실
 - 음식쓰레기 어떻게 처리할까?
 - 녹색서울을 꿈꾸며
- 추진방법 : 서울시 남부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일정 조정후 순회 방문 방영
 - 소요시간 : 1시간
 - 방 영 : 전담자 1인 고정배치
- 소요예산 : 비예산
- 효 과
 -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환경의 중요함과 행동수칙을 조기에 교육함으로써 관심도 제고
 -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요령 교육의 계기 부여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순회점검 】

○ 목 적

관내 대형아파트단지 및 관공서 등에 순회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경각심과 자율저감을 유도코자 함.

○ 대 상

- 대형아파트 단지(1,000세대이상) 17개단지
- 관공서(경찰서, 우체국, 세무서등)

○ 기 간 : 연중

○ 방 법

- 해당 아파트 및 관공서와 사전 협의하여 방문점검
- 순회 점검 1개반 4명 편성, 측정기기(매연, CO/HC)지참
- 경 유 차 량 : 매연검사
- 휘발유, 가스차량 : CO/HC검사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서울시내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82%)로 나타나고 있어 시민의 자율적인 협조없이 대기오염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자기차량의 배출가스 기준과 단속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사전예방코자 함.